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9.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제한 규정을 추가 신설하여 대관 시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람료’에 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회관 ‘정의’ 추가 신설(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 “사용자”(4호) 및 “이용자”(5호)에 대한 정의 신설

나.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의 제한’ 규정 추가 신설(안 제4조)

– 정치, 종교적 성격의 공연, 전시 및 행사

다.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및 ‘손해배상’ 조례 개정

(안 제11조제3항 및 제7항)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나. 예산관련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대관하여 행사·공연·전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치, 종교적 성격의 공연, 전시 및 행사

제11조제3항 중 “전담하되 예매를 위탁, 판매할”을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위탁 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30”을 “20”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를 “사용자 및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람자”를 “이용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사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대관하여 행사·공연·전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② (생략)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정치, 종교적 성격의 공연, 전시 및 행사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관람료) ①·② (생략) ③관람권의 수표는 예술회관에서 전담하되 예매를 위탁, 판매할 수 있다.	제11조(관람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위탁 할 ----- -----.

④ ~ ⑥ (생략) ⑦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과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회관 이용에 대해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다만, 단체는 <u>30인</u> 이상으로 본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생략) ② <u>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u> 예술회관 및 기타의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u>관람자</u>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u>20</u>----- ----. 제13조(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 ② <u>사용자 및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u> ----- ----- ----- ----- -----. 제15조(입장의 제한) ----- ----- ----- <u>이용자</u>----- ----- ---. 1. ~ 4. (현행과 같음)
--	--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소관 실 · 과		문화예술회관
입 안 자	관 장	최 현 도
	담 당	한 재 환
	담 당 자	허 수 경 (480-4553)